

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(제12조의7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	자격 취소			
나.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	자격 정지 2년	자격 취소		
다.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	자격 취소			
라.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	자격 정지 2년	자격 취소		
마.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	자격 취소			
바.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	법 제21조의6	자격			

다르게 행한 경우	제6항제6호	취소			
사.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	자격 정지 2개월	자격 정지 6개월	자격 정지 12개월	자격 취소
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	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	자격 정지 2개월	자격 정지 6개월	자격 정지 12개월	자격 취소